

제14회 변시 상법사례시험 총평

장원석 변호사

1. 전반적인 총평

제14회 변시 상법사례는 양적인 측면에서 작년의 5문제보다 3문제가 늘어난 8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 단순한 법리나 큰 쟁점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쟁점을 묻는 문제가 많았다는 점이 특징인바, 전반적으로 모의기출쟁점이 다소 많이 나왔지만, 생소한 배당문제라든지 어음법의 배서의 불연속 쟁점이 출제되는 바람에 시험장에서 답안 작성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구체적인 평가

가. 문제1의 경우

설문1(10점)의 경우 ‘이사의 부당해임에 따른 손배청구’를 묻는 문제인데, 단순히 청구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례 기준 및 ‘입증책임’을 묻는 문제로서 평소에 판례문구를 암기해두지 않았다면 시험장에서는 두루뭉술한 답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설문2(10점)의 경우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의결권에 대한 위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질권설정자가 여전히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례가 핵심인 문제였는데, 이는 종전 기출문제(9회변시)에서도 나온 쟁점이었므로 어려운 쟁점은 아니었다고 본다.

나. 문제2의 경우

설문1(15점)의 경우 명의개서 미필주주와 이의배당청구권자의 문제로서, 명의주주만이 이의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이 포인트이며, 2017년 전합의 태도를 설시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설문2(20점)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문제인데,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배당이므로 협의의 위법배당사유는 없지만, 배당절차인 주총결의에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선결소송으로 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 된다.

설문3(10점)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으로 현물배당하는 경우¹⁾ 필요한 절차를 설시하는 것이 핵심인 문제인데, 자기주식으로 현물배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다수임에도 출제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인바, 전형적이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기 위한 문제라고 보인다.

다. 문제3의 경우

설문1(15점)의 경우 농부는 당연상인이 아닌 의제상인이 될 수 있으며,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는 상인간 매매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면,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관건인 문제였다. 평소 자주 접하는

1) 자기주식으로 배당하면 주식배당이 아니라 현물배당이라는 점은 3회 변시와 21년 모의시험 선택형지 문에 나왔던 쟁점이기도 하다.

쟁점이라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 본다.

설문2(10점)의 경우 어음상의 해의의 항변의 구체적인 의미를 적시하는 문제인바. ‘해의=악의+ 손해인식’이며, 악의가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의가 추정이 되어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포인트이다.

설문3(10점)의 경우, 배서의 불연속문제인데, 배서의 불연속이 발생한 경우 자격수여효가 인정이 안 되지만, 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부분을 입증하면 어음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 포인트이다.

3. 마치며

기본기가 탄탄하면, 본 시험에서 조금 변형되어 출제되어도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기본이 되는 법리나 판례는 기본서, 암기장이나 문제집을 통해서 반복해서 연습해야 하며, 최근 모의기출시험에서 출제된 사례쟁점이나 객관식 문제 중 사례형문제들은 눈여겨 보아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